| 정관 |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라 칭한다.

제 2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20 (오장동)'에 둔다.

제 3조 (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은 신앙공동체로 예배와 선교, 섬김과 나눔,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본 교회의 신앙전통에 따라 상처받고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며 정의, 평화, 통일, 생명살림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더욱 성장해 갈 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정치의 원리

제 4조 (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 5조 (정신) 본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선포한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직, 진리와 행위, 교리와 법규, 선거권, 치리권, 권징 등 8가지의 교회의 정치원리를 존중하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더 나은 원리가 있으면 이를 위해 본 교회가 앞서서 실천하기로 한다.

제 6조 (양심의 자유) 하나님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그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성서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제7조 (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3장 교회운영

제 8조 (각 회의 규칙) 교회법인, 제직회 및 각 회 규칙 중 새로운 개정 요구가 있을

시, 각 회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의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 9조 (재정규칙) 교회 재정 운영 세칙은 별도로 당회의 지도를 받아 재정부가 제정하여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교인과 사역자

제 10조 (교인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거나 출교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1조 (교인의 의무과 권리) 교인은 정기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고 교회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12조 (담임목사)

1. 목사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목회활동과 교회 제반 행정을 지도한다.
2. 목사는 총회헌법이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임기는 6년이며, 6년 시무 후 최소 3개월의 안식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3. 목사의 연임은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인정하되, 연임을 묻는 공동의회는 임기 종료 직전에 실시한다.

제 13조 (장로)

1. 장로는 당회원이 되어 성례, 치리권, 노회관계 등에 교인의 대표로서 시무한다.
2. 장로의 자격은 총회헌법이 규정한 바를 준수하며 선임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임기는 6년이며, 6년 시무 후 최소 3개월의 안식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3. 장로의 연임은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인정하되, 연임을 묻는 공동의회는 임기 종료 직전에 실시한다.

제 14조 (협동목사, 협동장로) 목회활동과 교회 제반행정을 위해 협동목사 및 협동장로를 둘 수 있고, 당회가 승인할 경우 당회에 언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15조 (부목사, 준목, 전도사, 권사, 집사) 자격과 선임 등 관련내용은 총회헌법이 규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제5장 공동의회

제 16조 (소집)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제 17조 (개회 성수)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전에 공고하고, 그 때에 회집한 회원수대로 개회한다.

제 18조 (안건)

1. 당회, 제직회가 부의한 사항
2.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채용
3. 각종 사역자의 선출 및 재신임
4.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제 19조 (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제 20조 (공동의회의 임원) 공동의회의 임원은 당회 임원이 겸한다.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6장 당회

제 21조 (구성) 본 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며 담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당회장이 되나 그 외의 경우는 임명을 받아야 한다.

제 22조 (회집 및 성수) 연 1차 이상 정기회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 가 된다.

제 23조 (직무)

1. 성례 :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며 입교할 자에게 신앙 문답하여

세례를 주고 입교인의 자녀에게 아기 세례를 받게 하며 성년된 아기 세례교인을 입교 문답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성찬식을 주관한다.

2. 교적관장 : 당회는 교인의 교적을 관장하고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교인, 아기 세례 교인)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했을 때는 곧 보내온 당회에 접수 통지를 낸다.
3. 예배인도 : 예배 모범에 의하여 예배를 주관하고 특별 집회를 개최하며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대로 다른 목사를 임시로 청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한다.
4. 노회 관계 :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5. 권징 : 교인 중 범죄자가 있을 때에는 권징조례에 의하여 권징하고 회개하는 자는 해벌한다.

제 24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및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미조직 교회는 당회장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7장 제직회

제 25조 (회원) 서울제일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협동목사 포함), 장로(협동장로 포함), 준목,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조직하고 그 외는 회에서 결의하여 정한다. (헌법 정치 13장 71조)

제 26조 (임원 및 감사)

1. 회장 :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당회장이 겸임한다.
2. 서기 : 회의록 및 문서를 기록 보관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그리고 회의 결의에 따라 부서기를 둘 수 있다.
3. 감사 : 교회 재정회계와 각 기관 회계를 감사 지도하며 3인을 둔다. 감사 3인 중 1인은 당회에서, 2인은 당회원을 제외한 남·여 제직 중에서 선임한다.

제 27조 (회의소집) 정기회는 분기별로 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제 28조 (회무)

1. 개회기도회와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기타보고, 안건토의, 광고, 폐회기도 순으로 회무를 처리한다.
2. 임원, 감사의 선출은 제직회 총회시 회에서 직선한다.

제 29조 (직무)

1. 공동의회 의안 제안
2. 예산·결산 심의 집행
3. 재정에 관한 수지, 감사
4. 각종 임원 승인투표
5. 기타사항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8-1장 교회의 재산운영

제 30조 (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은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 31조 (재산운영) 교회의 재산 및 회계는 재단부문과 교회부문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한다.

제8-2장 재단관리이사회

제 32조 (목적) 교회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실행한다.

제 33조 (구성) 당회장과 당회에서 선임된 3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당회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며, 당회장 유고시에는 당회에서 선임한 자가 이사장직을 맡는다.

제 34조 (소집)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필요시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 35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6조 (운영)

1. 이사장은 본 교회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상임관리이사(임기 1년)를 임명하여 관리처를 지휘 감독한다.
2. 상임관리이사는 이사회의 결의 및 시행내용을 당회에 보고한다.

제 37조 (재산권관련) 교회의 기본재산 매도, 증여, 임대, 양도, 교환, 총회유지재단편입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심의와 제직회의 감사, 공동의회의 인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3장 재정부

제 38조 (목적) 재단관련 이외의 교회의 예산, 결산, 회계 등의 업무는 재정부가 관리토록 한다.

제 39조 (구성)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40조 (예산) 교회의 예산편성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제직회가 그 내용을 심의한 후 공동의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 41조 (결산) 재정부가 작성하고, 제직회의 감사를 받은 후 공동의회가 인준한다.

제 42조 (회계관련)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로 정하고, 결산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9장 부칙

제 43조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4조 (시행세칙) 각 회는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되 규칙이 상이할 시 정관이 효력상 우선한다.

제 45조 (총회헌법과의 관계) 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총회에서 제정한 헌법을 따른다.

제 46조 (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에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2월 14일 공동의회 제정
2004년 12월 12일 개정
2007년 12월 23일 개정
2017년 1월 15일 개정
2018년 1월 21일 개정
2020년 1월 19일 개정